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설치신고증명서를 분실한 상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작성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용어 변경(안 제22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 나.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일부 시설에 종사자가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종사자 수 변경(안 제7조 별표 3)
- 다.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기준 신설(안 제23조제1항 별표5 제1호 나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를 “그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再開)하려”로, “(휴지·운영재개)신고서”를 “(운영중단·운영재개)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중 “휴지하는”을 각각 “운영을 중단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휴지”를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휴지·운영재개)신고서”를 “(운영중단·운영재개)신고서”로 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가 설치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상담소등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직업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비고: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자격·학위 취득, 임직원, 공무원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상담소	자활지원 센터	지원시설			
			8명 미만	8명 이상 1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상담소등의 장	1	1	1	1	1	1
사무국장	—	—	—	—	1	1
상담원	3	2	1	3	4	5
직업훈련교사	—	2	—	—	—	—
사무원	1	1	—	1	1	1
조리원/세탁원	—	—	—	1	1	1
관리인	—	—	—	—	—	1
총계	5	6	2	6	8	10

별표 5 제1호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기준”을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을 “기간의 계산”으로, “처분을 한 날과”를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를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로 하며, 같은 호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차수(처분차수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	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그 밖의 수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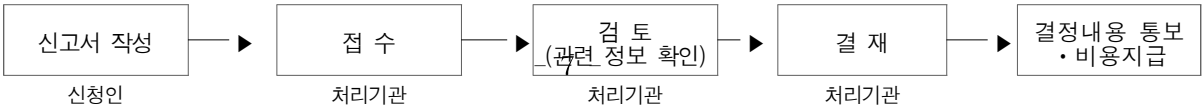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고 지 사 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 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며, 다만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처 리 절 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신고서
[]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 (센터, 상담소)	명칭	시설장(센터장, 상담소장) 성명	
	소재지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운영중단 기간	부터 까지

폐지·운영중단 또는 운영재개 사유

설치신고증명서 분실사유(필요시 작성)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시 입소자 조치계획	귀가	명	취업	명
	다른 지원시 설로의 이동	명	퇴소	명
	기타	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폐지 []운영중단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 출서류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운영을 중단하기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 수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 ----- 그 운영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개(再開)하려----- ----- ----- ----- (운영중단·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 ----- ----- ----- ----- ----- -----.
1. 상담소등의 입소자·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1. ----- ----- 운영을 중단하는 -----
2.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 ----- ----- 운영을 중단하는 ----- -----
2의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의2. ----- ----- ----- ----- 운영을 중단하는 -----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u>휴지</u>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u>휴지·운영재개</u>)<u>신고서</u>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u>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다만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가 설치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u> 4. ----- -----(<u>운영을 중단하기</u> ----- ----- ② ----- ----- -----(<u>운영중단·운영재개</u>)<u>신고서</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u>----- ----- ----- -----. 1. ~ 3. (현행과 같음)
--	--